

미지청소년글로벌봉사단 참가지원서

“미지청소년글로벌봉사단 몽골(울란바토르) 교육봉사 및 문화탐방”은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 인근에 위치한 보양트오하 7번학교에서 한국어반 교실 미화봉사 및 몽골 청소년 대상 교육봉사를 진행하고,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몽골 현지 문화체험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이 필요합니다. 프로그램 주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지원서에 정성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* 본 지원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- * 본 프로그램은 현지탐방일정 외에 주제이해와 안전을 위한 사전교육이 있습니다. 참가자는 6월 28일(금)-29일(토), 7월 13일(토)에 진행되는 사전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, **사전모임에 참여 가능한 분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**
- * 영문명은 여권상의 영문명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라며, 여권이 없는 경우 향후 신청할 여권 영문명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.
- * 작성 중 궁금한 점은 미지센터 문화사업팀 **070-4667-3773**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
참가자 개인정보

성명	국문		성별	여 () / 남 ()
	영문		생년월일, 나이	년 월 일(만 ○○세)
인적사항	주소			
	소속	(학교명/학년)		
연락처	휴대폰 등 연락 가능한 번호	(본인)		
		(보호자)		
	이메일			
기타사항	기타 건강상 고려할 사항			
		※ 복용하고 있는 약 및 알러지 등 센터에서 고려할 사항		
	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 해당여부	사회적 배려대상 지원 해당 () ※ 해당자만 ○ 표시 / 증빙서류 제출 필요(4페이지 참조)		

자기소개 및 활동계획

* 지원서 상에 작성하는 내용은 '맑은고딕 (혹은 돋움) 10pt'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정해진 크기를 변형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1. 관심분야, 대외활동, 취미 등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솔직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.

2. 프로그램 지원 동기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에 대해 작성해주세요.

3. 교육봉사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경험이 있으시면 당시 활동내용 및 담당역할 등을 알려주세요.

본인은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'미지'에서 실시하는 '미지청소년글로벌봉사단'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합니다. 모든 내용은 본인이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, 타인이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및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

2024년 월 일

지 원 자 _____ (서명)

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 안내

본인이 아래 범위의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
지원서와 함께 해당 증빙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 미제출 시 참가비 감면이 불가합니다.

- 아 래 -

<사회적 배려대상 증빙서류>

범 위	증빙서류	비 고
기초생활수급자	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-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- 온라인 민원24
저소득한부모가족	한부모가족증명서	
다문화가족	(귀화자 경우)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, 제적등본	
장애인 청소년	장애인 증명서	
북한이탈자	북한이탈주민증명서	-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- 시/군/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담당관이 발급한 학력확인서
법정 차상위계층	장애(아동)수당 대상자 확인서,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, 자활근로자확인서,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	-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- 국민건강보험공단
농어촌 청소년	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※ 본인과 친권자가 농어촌(읍면 지역 또는 「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」(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(제2조관련))에 해당에 3년 이상 거주	-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- 온라인 '민원24'
학교 밖 청소년*	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장 추천서 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상자에 한함)	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
	추천서 불가 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임을 입증하는 서류 (예시) 제적증명서, 미진학사실확인서 등	
가정 밖 청소년**	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확인서 (이용, 사례관리 포함)	- 청소년 복지시설

* (학교 밖 청소년)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의거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에 해당함

** (가정 밖 청소년) 가정 내 갈등·학대·폭력·방임, 가정해체,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(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조제5호)